



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및 법체계

2014. 12. 12.

IT · 금융정보보호단

김동일 선임

목 차



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요



개인정보보호법



신용정보법, 금융실명법



기타

I .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요

I.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요

1. 연혁

- '11.9.29.까지는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보호법, 정통망법 등 분야별 개별법으로 규정
- **일반법** 지위의 **개인정보보호법**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('11.3.29.공포 '**11.9.30. 시행**)
- 종전 개인정보처리자 50만 → 약 350만(모든 개인정보처리자)로 적용대상 확대

I.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요

2.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체계

- 일반법 : 개인정보보호법
- 특별법 : 신용정보법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), 금융실명법(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), 전자금융거래법, 정통망법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) 등
- 관계 : 특별법에 정함이 없는 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됨

II. 개인정보보호법

- **Ⅱ . 개인정보보호법**

1. 목적

-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,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
(법 제1조)

• II . 개인정보보호법

2. 정의

- “**개인정보**” :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) (법 제2조)
- “**개인정보처리자**” :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
- “**개인정보파일**” :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(集合物)
- “**처리**” :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연계, 연동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(訂正)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(破棄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

• Ⅱ . 개인정보보호법

<判例> 개인정보인지 여부

- 게임상의 ID/PW(2006나12182)
 - 엔씨소프트 게임서버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부 사용자의 ID/PW를 로그화일에 기록
- 특정 금융상품 가입고객에게 해당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의 성명, 주민번호, 이메일주소 등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발송(2006가합33062)
 - 국민은행이 인터넷 복권통장 가입고객 중 일부에게 안내메일 발송하면서 파일을 첨부
- 휴대전화의 IMEI 및 USIM번호의 조합정보(2010고단5343)
- 피고인의 부탁으로 신고자의 휴대전화 뒷 4자리를 알려줌(2013고단17)

• Ⅱ . 개인정보보호법

3-(1) 수집·이용이 허용되는 경우

1. 정보주체의 **동의**를 받은 경우

2. **법률의 특별한 규정, 법령상 의무 준수**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

예) 의료법 등

3. 공공기관이 **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**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

예)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보험급여 관리 등을 위해 진료내역 등 정보 수집

• II . 개인정보보호법

4. 정보주체와의 **계약 체결·이행**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

예) 쇼핑몰과 계약된 배송업체가 주문상품 배송을 위해 주소 등을 수집

5. 정보주체 등의 **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 보호** (사전동의 받기 곤란한 경우)

예) 조난,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연락처, 위치정보 등 수집

6. 개인정보처리자의 **정당한 이익 달성**을 위해 필요한 경우

예) 정당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, 채권추심 등

• II . 개인정보보호법

3-(2)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

1. 정보주체의 **별도 동의**를 받은 경우
2. **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**이 있는 경우
3.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
4. 통계작성·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<공공기관에만 해당하는 사유>

5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(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)
6. 조약, 기타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등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
7. **범죄수사 및 공소제기·유지에 필요한 경우**
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
9. 형 및 감호, 보호처분 집행에 필요한 경우

• Ⅱ . 개인정보보호법

4-(1) 민감정보 (법 제23조)

- 민감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

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,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**예외적으로 처리 허용**

- 민감정보의 범위

- ① 사상·신념, 노동조합·정당의 가입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 관련정보
- ② 유전자 검사에 따른 유전정보
- ③ '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'에 따른 범죄경력 정보

• II . 개인정보보호법

4-(2) 고유식별정보(법 제24조)

- (현행)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.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,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 허용

고유식별정보의 범위 (영 제19조)

-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|
| ① 주민등록번호 | ② 여권번호 |
| ③ 운전면허번호 | ④ 외국인등록번호 |

- ('14.8월) 주민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해 처리 허용

• II . 개인정보보호법

4-(3) 주민등록번호의 처리(법 제24조의2)

- (개정)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 허용

<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>

제24조 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자료,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허가, 등록 등에 관한 사무
3. 조사, 자료제출 요구, 감독,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

⇒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해당

• Ⅱ . 개인정보보호법

5. 영상정보처리기(CCTV)

-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 특정 목적으로만 설치·운영
(법 제25조제1항)

<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허용 사유>

- 1)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
- 2) 범죄예방 및 수사
- 3)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
- 4) 교통단속
- 5) 교통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
• Ⅱ . 개인정보보호법

- 목욕실, 화장실, 탈의실 등 개인 **사생활**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금지
 - 다만, 교정시설, 정신의료기관에는 설치·운영 허용
- 영 상 정 보 처 리 기 기 설 치 목 적 과 다 른 목 적 으 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 조작,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, 녹음기능 사용 금지

• Ⅱ . 개인정보보호법

6. 정보주체 권리보장

- 유출통지 및 신고

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시 지체없이 (5일 이내)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 통지, 1만건 이상 유출시 안행부 등 신고(법 제34조)

- 출처고지 의무

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 출처 등을 알려야 함 (법 제20조)

-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권

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요구할 수 있음 (법 제35조~제37조)

- **Ⅱ . 개인정보보호법**

7. 피해구제

- 침해신고 - KISA(한국인터넷진흥원)
- 분쟁조정
- 집단분쟁조정
- 단체소송

Ⅲ. 신용정보법 · 금융실명법

Ⅲ. 신용정보법·금융실명법

1. 신용정보법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)

(1) 목적

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·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

Ⅲ. 신용정보법·금융실명법

(2) 정의

- **개인신용정보** :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

가.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(개인식별정보)

생존하는 개인의 **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**, 외국인등록번호, 국내거소신고번호, 여권번호, 성별, 국적 및 직업 등(나~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)

나.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
대출, 보증, 담보제공, 당좌거래, 신용카드, 할부금융,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 및 한도 등

Ⅲ. 신용정보법·금융실명법

다.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

연체, 부도, 대위변제, 대지급과 거짓, 속임수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·해소의 시기 등

라.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
개인의 재산·채무·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등

마.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정보

- 법원의 금치산·실종선고, 회생/파산 관련 결정,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, 경매 정보
- 세금, 벌금·과태료·과징금 등의 체납 정보
-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
- 신용등급,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회복 등에 정보 등

Ⅲ. 신용정보법·금융실명법

(3) 정보보호 관련 금지행위

- 제32조 개인신용정보부당제공
- 제33조 개인신용정보부당이용
- 제34조 개인식별정보부당이용 및 제공
- 제42조 업무목적외 누설

- 제50조 제2항 제3호

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·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·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

Ⅲ. 신용정보법·금융실명법

2. 금융실명법(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)

(1) 정의

- “금융거래” :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【受入】 · 매매 · 환매 · 중개 · 할인 · 발행 · 상환 · 환급 · 수탁 · 등록 · 교환하거나 그 이자,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
- “거래정보등” :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

Ⅲ. 신용정보법·금융실명법

(2) 금지행위 : (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)

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(이하 “**거래정보등**”이라 한다)를 타인에게 **제공하거나 누설**하여서는 아니 되며,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**제공을 요구**하여서는 아니 된다

IV. 기타

IV. 기타

1. 참고자료

-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·고시 해설 - 행자부
-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- IT금융정보보호단
- 금융실명제종합편람 - 금융위
-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- 은행연합회
-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- 행자부

IV. 기타

2. 개인정보유출방지 종합대책

- '14.3.10.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
- '14.3.14. 금감원 세부추진과제 76개 과제 선정
- 금융위, 금감원, 협회, 회사 등 공동으로 TF 구성하여 매월 과제 이행상황 파악 및 과제 추진 중
 - 정보수집최소화, 주민번호노출최소화, 정보제공 방법의 구체화, 모집인의 불법정보활용시 퇴출, 필요한 기간만 보관후 파기, 지주그룹계열사간 정보 제공 제한, 정보주체의 권리강화(do no call 등), 지속적 점검 및 제재강화

IV. 기타

3. 금감원내 정보 관련 업무분담 현황

- 금감원내 개인정보 보호 : 정보화전략실
- 신용정보법(업자) : IT감독실 신용정보팀
- 신용정보법(정보) : IT·금융정보보호단
-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개선 : IT·금융정보보호단
- 금융실명법 : 은행감독국 등



금융감독원

감사합니다

